

미래전략사업단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루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재정수익의 확대를 위하여 정원 외 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전략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6.2.29.개정)

제2조(기능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 (2016.2.29.개정)

- ① 평생교육원의 운영
- ② 국제교육원의 운영
- ③ 인성교육원의 운영
- ④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
- ⑤ 기타 사업단의 수익에 관한 중요사항 및 이에 관하여 총장이 위임한 사항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한다.

② 단장 및 사업단 전담인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 (2016.3.14.개정)

④ 사업단은 평생교육원, 국제교육원, 인성교육원, 계약학과(학부/석사) 등의 조직으로 구성하며, 원활한 통합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 (2016.3.14.개정)

⑤ 총장은 운영위원을 임명하며,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. (2016.3.14.개정)

제4조(임기) 보직자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및 단장)

① 총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② 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- 총장
- 미래전략사업단장
- 인성교육원장
- 국제교육원장
- 계약학과장 (2016.3.14.개정)
- 산학협력단장
- 교무처장

제6조(회의) ①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한다. (2016.2.29.개정),(2016.3.14.개정)

②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미래전략사업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 (2016.2.29.개정)

③ (2016.2.29.삭제)

제7조(회의록) (2016.2.29.삭제)

제8조(전문위원) (2016.2.29.삭제)

제9조(연구비 등 지급) (2016.2.29.삭제)

제10조(재정) 본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, 국제교육원, 인성교육원, 계약학과 (학부/석사)는 본교 예산회계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편성 및 운영한다.

미래전략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 (2016.2.29.개정),(2016.3.14.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